채권법 10

-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'상당한 기간'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
- (출처 :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24542 판결【약정금】[공1998.2.1.(51),406])

- cf.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,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.
- (출처 : 대법원 1969.5.13. 선고 68다1726 판결【손해배상】 [집17(2)민,081])

- 3) 책임의 가중 : 제392조 ㅁ 이행지체, ㅁ 채무자의 과실이 없어야 함, ㅁ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다면 손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. 그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함(대판 1962.5.24., 62다175).
- 4) 계약해제권 (544조)

- 이행불능
- 이행불능 요건: □ 후발적 불능, □ 채무자의 귀책사유, □ 위법성
- □ 후발적 불능

-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·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.
- (출처 :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22850 판결【손해배상(기)】 [공2003.3.15.(174),685])

- 이행불능을 인정 또는 부정한 판례
- □ 부동산 이중양도
-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.
- (출처 : 대법원 1965.7.27. 선고 65다947 판결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】[집13(2)민,047])

- □ 가압류·처분금지가처분
-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**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**,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, **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**.
- (출처 :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11045 판결【구상금】[공1999.7.15.(86),1393])

-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, **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,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**이므로,

-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**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**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(출처 : 대법원 2006.6.16. 선고 2005다39211 판결【대여금】 [공2006.8.1.(255),1333])